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청주시·청원군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·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 설치와
- 진천군·음성군 내 혁신도시 추진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한시정원 5명 증원
- 정원의 총수 조정 :
 - 2,964명 → 2,969명 (증 5명) (안 제2조)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70명 → 1,475명
- 정원조정 내역 :
 - 일반직 5명 증원 : 3급 +2명, 4급 +1명, 5급 이하 +2명

- 일반직 직급조정 : 5급이하 △1 → 4급 +1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주시·청원군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·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 설치와 진천군·음성군 내 혁신도시 추진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은

- 정원의 총수를 2,964명에서 2,969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,470명에서 1,475명으로 하는 것임.
- 정원조정 내역을 보면, 3급 2명, 4급 1명, 5급이하 2명을 증원하며, 5급이하 1명을 감축하여 4급 1명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것임.

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주시·청원군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·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 설치와 진천군·음성군 내 혁신도시 추진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